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과 목		②구 분	코드	③합 계	감 면 분 또는 합 병 등 승 계 사 업 해 당 분 등				기 타 분		비 고
									⑥ 금액	⑦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연결 납세 방식 적용전	(1) 매 출 액		01								
	(2) 매 출 원 가		02								
	(3) 매출총손익 {(1)-(2)}		03								
	(4) 판매비와 관리비	개별분	04								
		공통분	05								
		계	06								
	(5) 영업손익 {(3)-(4)}		07								
	(6) 영업외 수익	개별분	08								
		공통분	09								
		계	10								
	(7) 영업외 비 용	개별분	11								
		공통분	12								
		계	13								
	(8)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설정전 소득 {(5)+(6)-(7)}		21								
연결 납세 방식 적용후	(9) 연결조정 소득금액	개별분	22								
		공통분	23								
		계	24								
	(10) 연결수정소득금액 {(8)+(9)}		25								
	(11) 소득통산이 제한 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26								
	(12)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결손금) {(10)+(11)}		27								
	(13) 연결소득개별귀속 액(각연결 사업연 도결손금배분액)		28								
	(14) 연결 이월결손금		29								
	(15) 비과세 소득		30								
	(16) 소득 공제액		31								
(17)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13)-(14)-(15)-(16)}		32									

작성 방법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연결취득자법인 자산처분손실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빈칸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감면을 등을 적습니다.
6. (9)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㉓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7.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 : 연결집단의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 등"과 "기타분"의 소득금액을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을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 (13)연결소득개별귀속액(각연결사업연도결손금배분액)란의 "감면분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8. 비교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